

제2025-79호 2025년 9월 4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40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 여수시 고시	제2025-406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연등천 제2025-12호)	3
○ 여수시 고시	제2025-407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5
○ 여수시 고시	제2025-408호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인가	6
○ 여수시 고시	제2025-409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기간 변경(중흥천)	8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640호	전문건설업 등록-주식회사 명진기업	10
○ 여수시 공고	제2025-2645호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11
○ 여수시 공고	제2025-26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12
○ 여수시 공고	제2025-2653호	소매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13
○ 여수시 공고	제2025-2655호	공인폐기(여수시 공고 제2025-2655호)	15
○ 여수시 공고	제2025-2661호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16

입 법 예 고

○ 여수시 공고	제82025-2654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	----------------------------	----

훈 령

○ 여수시 규칙	제433호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97
----------	-------	------------------------	----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4.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둔덕동 산96-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나. 명 칭: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이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399,21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전남대학교총장
 - 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991. 6.18.~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전남대학교 행정지원과(☎061-659-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 치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둔덕동	369-1	전	285	285	교육부				
2	둔덕동	369-2	전	1,530	87	의령읍씨 응계공파종중	전남 여수시 자동 310			
3	둔덕동	375-1	답	4,368	4,368	교육부				
4	둔덕동	394-6	임	117	117	교육부				
5	둔덕동	396	답	370	370	교육부				
6	둔덕동	396-1	답	873	873	교육부				
7	둔덕동	397	답	5,422	5,422	교육부				
8	둔덕동	410-5	전	700	700	교육부				
9	둔덕동	411-1	답	3,234	3,234	교육부				
10	둔덕동	422-3	전	8	8	교육부				
11	둔덕동	422-4	전	281	281	교육부				
12	둔덕동	424	답	522	522	교육부				
13	둔덕동	424-2	임	1,041	1,041	교육부				
14	둔덕동	424-3	전	1,418	1,418	교육부				
15	둔덕동	425	임	116	116	교육부				
16	둔덕동	617-29	구거	4,925	275	건설부				
17	둔덕동	산91	임	5,752	5,752	교육부				
18	둔덕동	산96-1	임	211,698	211,698	교육부				
19	둔덕동	산96-2	임	58	58	교육부				
20	둔덕동	산100	임	397	397	교육부				
21	둔덕동	산104-1	임	8,858	8,858	교육부				
22	둔덕동	산108-4	임	1,119	1,119	임태방	여수시 미평동 780-1			지분 : 748/1,686
						교육부			지분 : 938/1,686	
23	둔덕동	산109-4	임	1,281	1,281	교육부				
24	둔덕동	산111	임	962	962	곽금지	여수시 둔덕동 209			
25	둔덕동	산113-16	임	86	86	교육부				
26	둔덕동	산113-17	임	131	131	여수시				
27	미평동	708-5	답	4	4	교육부				
28	미평동	900-1	답	4,927	4,927	교육부				
29	미평동	900-4	답	530	530	교육부				
30	미평동	901-2	답	2,240	2,240	교육부				
31	미평동	901-3	전	298	298	교육부				
32	미평동	901-4	답	731	731	김근진	충남 보령시 봉산1길 88,			지분 : 72 /843
						교육부			지분 : 771 / 843	
33	미평동	902-1	답	198	198	교육부				
34	미평동	904	답	274	274	교육부				
35	미평동	905-1	전	2,311	2,311	교육부				
36	미평동	905-2	답	1,511	1,511	교육부				
37	미평동	905-3	전	1,534	1,534	교육부				
38	미평동	905-4	전	810	810	교육부				
39	미평동	산103-1	임	131,060	130,919	교육부				
40	미평동	산110	묘	3,471	3,471	교육부				
40필지				405,451	399,217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연등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m ²)	점용목적	점용기간	
2025-12	연등천	전라남도 여주시 만성로 178	대화도시가스(주)	여주시 충무동 618-1 및 교동 628-1	64	배관철거 임시 강관비계 설치	2025. 9. 8. ~ 2025. 10. 24.	

여수시 고시 제 2025-407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 9. 3.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라남도 제2015-188호(2015.7.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 되고, 여수시 제2022-157호(2022.4.22.), 여수시 제2024-201호(2024.5.17.) 및 여수시 제2024-356호(2024.8.9.)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일대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9월 3일

여 수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일대	28,418.00	27,715.00	703.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덕충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하식)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여수시 덕충안길 5, 덕충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 3호(덕충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 09. 03.
6.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명세 : 여수시청 허가과 및 조합에 비치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위 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높이(m) (지상/지하)	주용도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일대	27,715	21.74	221.95	99,534.9963	51.7 (18/7)	공동주택(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규 모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분양	임대분	합 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전용면적 85㎡초과	102.9852㎡	15	-	15	102A형
		102.9814㎡	30	-	30	102B형
		109.9868㎡	32	-	32	109A형
	전용면적 60~85㎡이하	84.9817㎡	260	-	260	84A형
		84.9481㎡	35	-	35	84B형
		84.9864㎡	106	-	106	84C형
	전용면적 60㎡이하	59.9891㎡	56	-	56	59A형
	합 계	-	534	-	534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도로

시설 종류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90	18	보조 간선	64 (34)	덕충동 938	덕충동 940	일반 도로	-	여고-256 ('11.12.5)	
기정	중로	2	145	18~23.5	보조 간선	577 (170)	덕충동 587	덕충동 1175-3	일반 도로	-	국고10-182 ('10.4.6)	

※ 1.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2.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10. 기타 관계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과 비치 ☎: 659-4098) 끝.

지방하천 점용 허가기간 변경 고시(중흥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3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	점용목적	점용기간	
2009-5	중흥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케미칼(주)	여수시 중흥동 1691번지	129	수전시설물 (파이프랙) 설치	당초 : 2009. 5. 20. ~ 2024. 6. 30. 변경 : 2009. 5. 20. ~ 2029. 6. 30.	기간 연장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명진기업(오*규)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상암로 558
3. 법 인 등록번호 : 180111-1200433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여수-25-라-09	도장공사	2025. 9. 2.

2025년 9월 2일

여 수 시 장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2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대상자	송달주소	위반내용	반송사유	과태료 금액
김○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30, 4층 402호(우산동)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보고서 미제출	폐문부재	과태료 2,500,000원

3.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4. 공고기간 : 2025. 9. 2. ~ 9. 17.(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공고사항

가. 「주택법」 제12조제4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6조제3항1호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여수시청 허가과(☎ 061-659-4108)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061-659-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2.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3.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해양정책과)	여수시 소호동 1181-4번지 일원 공유수면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사용 가도 및 임시적치장 설치	1,870.2㎡	6개월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9. 3. ~ 2025. 9. 23.(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9. 3. ~ 2025. 9. 23.(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제한 명령 공고

여수시 공고 제 2025-000 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여수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여수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전남권*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 전남권(광주, 전남)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 동일 생활권역 : 전라북도

5. 기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 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 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공인 폐기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3.

여 수 시 장

1. 폐 기 일 : 2025. 9. 3.(수)
2. 폐기사유 : 민원서류 발급용 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폐기
3. 폐기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폐기인영	관리부서	폐기일
1605	문수동장인민원실전용		문수동	'25. 9. 3.
1619	미평동장인민원실전용		미평동	'25. 9. 3.
1604	쌍봉동장인민원실전용		쌍봉동	'25. 9. 3.
1621	시전동장인민원실전용		시전동	'25. 9. 3.
1543	여천동장인민원실전용		여천동	'25. 9. 3.
1606	삼일동장인민원실전용		삼일동	'25. 9. 3.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의거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일

여 수 시 장

1. 명 칭 : 여수시 건축위원회

2. 모집인원 : 25명

3. 모집분야 : 건축, 건축구조, 도시계획, 소방, 경관색채, 조경, 여론, 토목, 교통, 법조계 분야 등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모집결과에 따른 모집인원 및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

4. 임 기 : 3년(필요한 경우 한차례 연임 가능)

※ 2022. 10. 18. ~ 2025. 10. 17. 임기중 활동한 위원 중 연임하지 않은 위원은 한차례 연임 가능

5. 신청 자격

가. 아래 자격 요건 중 모집 분야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대학에서 건축 또는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교수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여수시 심의 및 자문(수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다.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라.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위원 선정

- 가.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후 분야별 전문위원회(계획분야, 민원분야, 구조분야) 구성
- 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의지, 전문성,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 다.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이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은 위촉 제한(여성 제외)

7.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5. 9. 3.(수) 09:00 ~ 9. 18.(목) 18:00
-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
- 다. 접수방법 : 전자문서, 이메일접수(akxlfek2@korea.kr)
 - ※ 제출양식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라. 제출서류
 -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하단서식 참고)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및 학위 등 기타 증빙자료 1부.

8. 기타사항

-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바람. ※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최근 3개

월내 발급된 서류로 한함

- 다. 접수된 신청서는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됨.
- 라.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은 기타사항에 반드시 기재 바람.
- 마.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위원 미 선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않음.
- 바.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자.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허가과 건축허가팀(정은주, ☎061-659-4101)으로 문의 바람.

공 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여건을 고려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적용기준 구체화(안 제5조)
- 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재청취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제6조)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허용 기준 신설(안 제10조의2)
- 라. 표고 100미터 이상 건축 수반 토지형질변경 도로 기준 명확화 (안 제12조, 별표 23)

- 마. 성장관리방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개편 개정사항 및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재청취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 바. 공공사업에 한정하여 산지관리법 기준을 준용한 토석채취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16조)
- 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조문 해석 명확화 (안 제20조)
- 아.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주택호수 조문해석 명확화(안 제21조)
- 자.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물 완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개정사항 반영(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 차.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 범위내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안 제24조)
- 카. 경관지구 건축물 규모 및 건축법 기준을 준용한 조정 기준 명확화 (안 제25조)
- 타. 방재지구내 건축물 입지 허용 기준 제시(안 제28조)
- 파.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및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 반영(안 제33조)
- 하.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위임 조항 변경사항 반영 (안 제34조)
- 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수립에 따른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 반영(안 제35조)
- 너.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용적률 기준 완화,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용적률 완화 개정사항 반영(안 제36조)

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임명·위촉·해촉 기준 제시
(안 제38조)

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조문 명확화(안 제39조)

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의2)

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비공개 및 회의록에 관한 조문 명확화(안 제
42조, 안 제43조)

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개정 연계 정비(안 제
44조의2)

3. 일부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25. 9. 4. ~ 9. 2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 전 화 : 061) 659-4012, 팩스 : 659-5833

- 이메일 : honest07@korea.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가. 여수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인터넷홈페이지

다.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라. 법 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차로 이상 도로)”를 “(별표23 기준을 따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를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장관리방안의”를 “성장관리계획의”로, “성장관리방안에서”를 “성장관리계획에서”로 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제5호 중 “(300미터이내)”를 “(300미터이내,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100미터이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1조제1항제3호 중 “이하”를 “이하[주택호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세대)수를 주택호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호가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근린생활시설(자목·타목 중 기원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제25조제3항 본문 중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를 “각 입면부의 총 길이(가로 길이에 한함)를 30미터 이하(가시되지 않는 지하층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해당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제2항제2호가목 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 다만 영 제31조제2항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하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34조 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8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성장관리계획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5항”을 “법 제75조의3제2항”으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1,300퍼센트”를 “1,5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1,000퍼센트”를 “1,3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700퍼센트”를 “9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1,000퍼센트”를 “1,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20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로 한다)”를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25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로 한다)”를 “3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위원의 해촉)”을“(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여수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9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동일 안건을 재심의등으로 반복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3회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비공개”를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심의의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을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및”을 “제39조의2, 제4

1조, 제42조, 제43조,”로 한다.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별표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 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고려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

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계 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 복제업·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다만, 세차장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해당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 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 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2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9. 5. 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및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표 고 의 산 정 기 준

1. 표고의 기준

- 가. 표고의 기준은 대상지역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표고의 산정

가. 일반적인 기준

- 1)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하의 토지
- 2)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상의 토지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나.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의 기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상일 경우 제일 가까운 도로를 기준으로 높이 30m 미만에서는 예외

- 1) 도로 : 개설이 완료된 5m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 ①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②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 2) 기준점 : 대상 토지(허가신청 부분) 중심부로부터 제일 가까운 지점의 도로중심점의 표고

3. 표고 적용의 예

제일 가까운 도로를 기준으로 높이 30m 미만이란

- 1) 기준도로 표고 100m + 예외 높이 30m = 130m
- 2) 기준도로 표고 90m + 예외 높이 30m = 120m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외에 열람기간 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도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p> <p>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p> <p>가. 여수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p> <p>나. 시 인터넷홈페이지</p> <p>다.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p> <p>라. 법 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p> <p>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p>
<p>제6조(재공고·열람사항) 영 제22</p>	<p>제6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p>

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서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2. (생략)

3.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제16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간선도로(대로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것

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

1. 2. (현행과 같음)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

1. 2. (현행과 같음)

3. 성장관리계획의 -----
----- 성장관리계획에서 -----

제16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

-----.

1. ~ 4. (현행과 같음)

5. -----
-----(300미터이내,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100미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업지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3. 주택호수 : 10호 이하

터이내)-----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 이하[주택호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세대)수를 주택호수로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
 목8)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을 말
 한다.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
 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관
 지구별로 규정한 각 목의 건축
 물을 말한다.

1. (생 략)
2. 특화경관지구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설(가·나·다목을 제외하
 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
 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
 설(자목·타목 중 기원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

<삭 제>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
 한)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공동주택 중 아파
 트

<삭 제>

- 다. -----
 ----- 근린생활시
 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
 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

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에 한한다)

라. ~ 너. (생략)

3. 시가지경관지구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
병원과 격리병원

다. ~ 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
설(다만, 교정시설은 교도
소, 소년원 및 그 밖의 범
죄자의 갇셈·보육·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는 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타.·파. (생략)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
한) ①·② (생략)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
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준
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 및 일
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

마원 및 단란주점

라. ~ 너.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격리
병원

다. ~ 차. (현행과 같음)

카.-----
-----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
시설

파.·하. (현행 타목 및 파목
과 같음)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
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각 입면부의 총

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 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제2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신 설>

길이(가로 길이에 한함)를 30미터 이하(가시되지 않는 지하층은 제외)-----

④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해당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제33조(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생략)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생략)

3. ~ 6. (생략)

③ ~ ⑨ (생략)

<신설>

⑩ (생략)

⑪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40퍼센트, 다만 영 제31조제2항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경우: 60퍼센트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

⑫·⑬ (생략)

제3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

하는 비율”이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

⑬·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제3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

-----.

제35조(성장관리계획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

-----.

1. (현행과 같음)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 1. ~ 6. (생략)
-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로 한다)

-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로 한다)

- 13. ~ 18. (생략)
-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로 한다)

- 20. · 21. (생략)
- ② · ③ (생략)
- ④ 삭제
- ⑤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⑥ ~ ⑩ (생략)
제3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해

-----.

- 1. ~ 6. (현행과 같음)
- 7. ----- 1,500퍼센트
- 8. ----- 1,300퍼센트
- 9. ----- 900퍼센트
- 10. ----- 1,100퍼센트
- 11. ----- 300퍼센트

- 12. ----- 350퍼센트

- 13. ~ 18. (현행과 같음)
- 19. -----
--- 성장관리계획-----

--

- 20. · 21.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⑤ -----

----- 140퍼센트-----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수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신 설>

<신 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제4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동일 안건을 재심의등으로 반복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3회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심의의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

<삭 제>

제43조(회의록) ① ----- 작성하여 -----.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

<p>제44조의2(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① (생략)</p> <p>②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u>제41조</u>, 제42조제1항,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p>	<p><u>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u>”이란 심의 종결 후 1개월을 말한다.</p> <p>제44조의2(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39조의2</u>, 제41조, 제42조, 제43조, ----- -----.</p>
---	---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3. (생 략)</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 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 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 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u>감안하여</u> 해당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p> <p>5. ~ 6. (생 략)</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 호의 수련시설(<u>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 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u>)</p> <p>8. ~ 9. (생 략)</p> <p>10. (생 략)</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p>	<p>[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다</u> -----<u>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u> <u>한다)</u>----- ----- ----- ----- ----- ----- <u>고려하여</u> ----- ----- -----</p> <p>5. ~ 6. (현행과 같음)</p> <p>7. ----- -----<u>(유스호스텔의 경우</u> <u>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u> <u>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u></p> <p>8. ~ 9. (현행과 같음)</p> <p>10. (현행과 같음)</p> <p>가. -----</p>

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생략)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신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

--- 별표 1의3-----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마. (현행과 같음)

바. 「소음·진동관리법」-----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
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 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16. ~ 17.(생략)

<신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

12. ~ 15. (현행 11. ~ 14.와 같
음)

16. -----
--- 교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18. ~ 19. (현행 16. ~ 17.과 같
음)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 (현행과 같음)

3. -----

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생략)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신설>

--- 별표 1의3-----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 별표 13에 따른 제
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마. (현행과 같음)

바. 「소음·진동관리법」-----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

10.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15. ~ 16. (생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

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 13. (현행 10. ~ 12.와 같음)

14. -----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5. -----
---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 ~ 18. (현행 15. ~ 16.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 (현행과 같음)
3. -----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 8. (생략)

9. (생략)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 고려

하여 -----

4. ~ 5. (현행과 같음)

6. -----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가. -----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

----- 별표 1의3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생략)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신설>

다. 「물환경보전법」 -----

라. 「물환경보전법」 -----

-----제1
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마. (현행과 같음)

바. 「소음·진동관리법」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0.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15. ~ 16. (생략)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 13. (현행 10. ~ 12.와 같음)

14. -----

동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5. -----
-----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 ~ 18. (현행 15. ~ 16.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략)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략)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

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가. -----

-----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나. -----

-----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2.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략)

2. (생략)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

----- 30미터 이상 거리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나. -----

-----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2. -----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
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
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
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
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생 략)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신 설>

----- 30미터 이상 거
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

나. -----

----- 30미
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3.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
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현행과 같음)

9. -----
--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3호의2 국방·군사시설

10. (생략)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9의2. ~ 10. (생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12. ~ 13. (생략)

<신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 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11. (현행 10.과 같음)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현행과 같음)

9. -----
--- 수련시설

9의2. ~ 10. (현행과 같음)

11. -----
-- 교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3. ~ 14. (현행 12. ~ 13.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현행과 같음)

7. -----
-----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 9. (현행과 같음)

10. -----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

것은 제외한다)

11. ~ 14. (생략)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 14.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5. (현행과 같음)

6. -----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현행과 같음)

8. -----

-----별표 1의2 -----

가. -----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 15. (생 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생 략)

10. (생 략)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생 략)

11. ~ 13. (생 략)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 15.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나. (현행과 같음)

11. ~ 13. (현행과 같음)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현행과 같음)

9. -----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 ~ 15.(생 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을 제외한다)

4. ~ 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같은 호 나목의 교육원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 15.(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 나목(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동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

4.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

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현행과 같음)

8. -----
-- 수련시설

9. -----

-----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

별표 1의3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 16. (생략)

<신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아목·자목·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를 제외한다)
3.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7. (생략)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

-----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 -----

10. ~ 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6. -----
-- 수련시설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신설>

11. ~ 13. (생략)

<신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 3. (생략)

<신설>

8.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9. (현행과 같음)

10. -----
---- 교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2. ~ 14. (현행 11. ~ 13.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생략)
<신설>

6. ~ 7. (생략)

[별표 23] 표고의 산정기준

- 1. (생략)
- 2. (생략)
- 가.(생략)
- 나.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의 기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100m 이상일 경우 제일 가까운 도로를 기준으로 높이 30m 미만에서는 예외
- 1) 도로 : 차량 교행이 가능한 5m

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

동호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동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및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6. (현행 5.와 같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 9. (현행 6. ~ 7.과 같음)

[별표 23] 표고의 산정기준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 나. -----

- 1) 도로 : 개설이 완료된 5m 이상의

이상의 2차로 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①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②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여수시 건축위원회	응모 분야	공고문 참조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추천 기관	(의무사항 아님)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기재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 위 (직급)			
	주 소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기재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최종학력 부터 작성)	취득년월	학 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보유현황 (상위등급 부터작성)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 가 · 관 리 기 관	비 고		
주요 경력사항	- - - -					
위원회 활 동 (최근부터 작성)	위촉기간	기관명	위원회 명칭	주요 기능		
기타사항	※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p>상기 본인은 『여수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25 . . .</p> <p style="margin-left: 150px;">지원자 성 명 (인)</p>						
<p>여 수 시 장 귀하</p>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모분야"는 해당 모집 분야명 기재

건축, 건축구조, 도시계획, 소방, 경관색채, 조경, 여론, 토목, 교통, 법조계 분야 등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된 분야 기재

나. "주소"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 및 거주지를 기재

다. "연락처"는 직장, 자택, 핸드폰, 이메일 기재

라. "학력"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 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마. "자격증"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상위등급부터 기재합니다.(사본 첨부 제출)

바. "주요경력"은 당해분야 주요경력을 기재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실적을 최근부터 기재합니다.

사. "주요 연구수행 실적" 및 "논문 발표실적"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

아.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메일로 제출시 작성자란에 서명 날인 후 이미지파일(서명 또는 도장)을 한글파일(hwp파일)로 작성(이미지파일을 한글파일에 편집)하여 제출 바랍니다.

2. E-Mail 제출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5년 9 월 2 일

여수시장

정경기



여수시 훈령 제433호

붙임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부.

여수시 훈령 제433호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는 유급휴가로 한다.”를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무원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일부개정안

(제 정) 2010.08.01 훈령 제248호

(전부개정) 2019.08.26 훈령 제364호

제22조(경조사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무원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경조사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는 유급휴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결혼 : 7일 2. 배우자의 출산 : 3일 3.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p>제22조(경조사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무원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p>

※여수시 공무원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7조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